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75
------	-----

2023. 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4.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직급체계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

(4급, 소방정)를 신설하여 소방 인력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소방령 이하 Δ 1 → (본청) 소방정+1

나. 신규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

시설추진반’ (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 (4급)로 격상·확대

- (본청) 4.5급 Δ 1 → 4급 +1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물재생센터(4명) 및 도로사업소

(8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

- (사업소) 5급 이하 Δ 12 → 전문경력관(고압전기안전관리) +12

라. 정책기획 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및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조정 (별표2, 3)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이내)	5급 (이내)	6급 (이내)	7급 (이내)	8·9급 (이상)	전문경력관 (이내)
현 행	3.5%	14.5%	34.5%	35.5%	10.5%	1.5%
개정(안)	3.5% (-)	16.5% (+2.0%p)	37.0% (+2.5%p)	34.5% (Δ 1.0%p)	7.0% (Δ 3.5%p)	1.5% (-)

[별표2]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이내)	연구사 (이상)	지도관 (이내)	지도사 (이상)
현 행	17%	83%	10%	90%
개정(안)	22% (+5.0%p)	78% (Δ 5.0%p)	20% (+10.0%p)	80% (Δ 10.0%p)

[별표2]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이내)	5급상당 (이내)	6급상당 (이내)	7급상당 (이내)	8급·9급상당 (이상)
비 율	34%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구 분	4급상당 이상 (이내)	5급상당 (이내)	6급상당 (이내)	7급상당 이하 (이상)	
비 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2.0%p)	4%이상 (△2.0%p)	

[별표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이내)	소방령 (이내)	소방경 (이내)	소방위 (이내)	소방장 (이내)	소방교 (이내)	소방사 (이상)
현 행	1%	2.2%	6.3%	7%	15%	33%	35.5%
개정(안)	1%	3% (+0.8%p)	7% (+0.7%p)	8% (+1.0%p)	15%	33%	33% (△2.5%p)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선 8기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19,167명)의 변동 없이 인력 조정과 직급구조 재설계를 위해 제출함.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에 따른 소방 인력 직급 조정[(직속기관) 소방령 이하△1 → (본청) 소방정+1]
 - ‘자원회수시설추진반’ (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 (4급)로 격상 확대(4·5급 △1 → 4급 +1)
 - 물재생센터 및 도로사업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5급 이하 △12 → 전문경력관(고압전기안전관리) +12]

< 정원 조정 내용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 무	일반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167	4	10,717	7	26	17	5	255	10	10,260	137	37	407	24	7,434	3	541
개편 후	19,167	4	10,717	7	26	17	5	256	9	10,248	149	37	407	24	7,434	3	541

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조정(안 별표)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음.

< 공무원 정원 조례상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

일반직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3.5% 이내	14.5% 이내	34.5% 이내	35.5% 이내	10.5% 이상	1.5% 이내	
연구직 · 지도직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17% 이내	83% 이상	10% 이내	90% 이상			
별정직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 상당		
	34% 이내	50% 이내	10% 이내	5% 이내	1% 이상		
소방직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 이내	2.2% 이내	6.3% 이내	7% 이내	15% 이내	33% 이내	35.5% 이상

- 정부는 2008년 직급별 정원기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서울시는 이후 4차례에 걸쳐 행정환경과 정책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급별 기준 비율을 조정함.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연혁 >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2004.9.24.(행자부령)	4%이내	14%이내	33%이내	34%이내	15%이상	-
2008.11.13	5%이내	16%이내	36%이내	35%이내	8%이상	-
2013.12.12	3%이내	13%이내	33%이내	34%이내	16%이상	1%이내
2017.9.21	3.5%이내	14%이내	33%이내	34%이내	14.5%이상	1%이내
2018.3.22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1%이상	1%이내
2020.5.19.~현재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0.5%이상	1.5%이내

○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해 4급 이상 상위직급과 5급 중간관리 직급의 비율이 낮은 편이고, 6급은 근속승진이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부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정원 조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르면, 6급의 정원비율은 34.5% 이내이나, 현원은 36.2%임(전체 현원 9,958명 중 6급 3,603명).

< 광역자치단체 직급 정원 기준 비교 >

구분	4급이상 (이내)	5급(이내)	6급(이내)	7급(이내)	8급·9급 (이상)	전문경력관 (이내)
시·도평균	5.2%	17.5%	33.9%	35%	7.4%	1%
시평균	4.7%	15.6%	33.2%	36.3%	9.3%	1%
서울	3.5%	14.5%	34.5%	35.5%	10.5%	1.5%
부산	4%	15%	37%	37%	6.5%	0.5%
대구	4.5%	14%	33%	36%	11.5%	1%
인천	5%	17%	36%	37%	4%	1%
광주	5%	15%	32%	36%	11%	1%
대전	5%	16%	34%	37%	7%	1%
울산	5.5%	17%	32%	33.5%	11%	1%
세종	5%	16%	27%	38%	13%	1%
도평균	5.7%	19.2%	34.5%	34%	5.6%	1%
경기	5%	20%	38.8%	34.7%	1%	0.5%
강원	7%	20%	33%	30%	9%	1%
충북	6%	19%	35.5%	34%	4%	1.5%
충남	6%	22%	34%	34%	3%	1%
전북	7%	20%	35%	32%	5%	1%
전남	6%	20%	35%	37%	1%	1%
경북	6%	19%	33%	36%	5%	1%
경남	5.2%	21%	37%	33.5%	2.5%	0.8%
제주	3.5%	12%	29%	34.5%	20%	1%

○ 더욱이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시민의 행정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정책개발 역량이 요구되면서 중간관리 직급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직의 역량을 증대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실무인력인 5급과 6급의 정원 비중을 현재보다 각각 2%p(14.5%→16.5%), 2.5%p(34.5%→37%) 확대할 계획임.
- 4차산업혁명, 고령화와 출산률 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정책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직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됨.
- 다만, 6급의 경우 개정안의 정원(37%)은 현재의 현원(36.2%)과 차이가 크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고, 5급의 경우(16.5%)는 여전히 전국 시·도 평균인 17.5%보다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중간 관리직급인 5급이 증원됨에 따라 팀 신설이 남발되어 정원책정 기준 조정의 당초 목적과 달리 조직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다.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직속기관) 소방령 이하△1 → (본청) 소방정+1]

- 서울시는 재난대응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실’ (1급)을 ‘재난안전관리실’ (1급)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상황관리과’ (4급, 소방정)를 신설할 계획임.

- ‘재난상황관리과’는 ‘안전총괄과(재난상황팀)’에서 담당하던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상시적인 재난상황의 전파와 접수체계를 마련하게 됨(상황총괄팀, 4개 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과에 배치되는 소방서 인력 9명은 직급 조정[소방사(9급상당) △5명 → 소방정(4급상당) +1명, 소방령(5급상당) +4명], 기구 간 정원이동[소방사(9급상당) +4명]으로 확보됨.
-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조별 실무 인원은 동일하나(6급 이하 2명), 관리자(팀장 1명) 인력이 주·야간 상시 배치됨.

<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개편 현황 >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기능		재난상황 모니터링, 상황발생시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등	
소관팀		안전총괄과 재난상황팀	재난상황관리과 상황관리1·2·3·4팀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2인1조/4조2교대)	24시간 교대근무(3인1조/4조2교대)
근무인력	전체	9명 (5급 1명, 6급이하 8명)	12명 (5급 4명, 6급이하 8명)
	조별	5급 관리자(행정직 1명) *주간만 근무 6급이하(방재안전직 등 일반직 2명)	5급 관리자(소방직 1명) 6급이하(소방직 1명, 방재안전직 1명)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재난안전 인력 재배치와 처우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안하였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함.

- 개정안의 ‘재난상황관리과’ 신설과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보강은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향후 신속한 재난 대응·대비와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의 격상·확대(4.5급 △1 → 4급 +1)

-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1. 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외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¹⁾.

< 마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개요 >

- 후 보 지 :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 일대(상암동)
- 시설규모 : 1,000톤/일(부지면적 21,000㎡)
- 소요예산 : 8,458억원
(국비 30% 포함 / 자원회수시설 7,177억, 주민편익시설 1,281억)
- 건립방향 : 시설 지하화,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시설로 조성
- 향후계획 : `22. 9. ~ `23. 6. 입지결정(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입지 발표)
`23. 3. ~ `24. 12. 사전 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공사 발주)
`24. 12. ~ `26. 공사 시행(착공 및 준공)

-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이 시설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협의, 행정소송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자원회수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강화된 전담조직이 필요함.

1) 서울시는 현재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안정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추진반’ (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 (4급)로 확대·격상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물재생센터 및 도로사업소의 정원 조정(5급 이하 △12 → 전문경력관 +12)

-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고압시설 및 전기설비 운영 인력의 정원 12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용량 1,000kW 이상인 전기수용설비 등을 관할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자격기준[전기기술자, 전기기사(실무경력 2년) 등]을 충족하는 상주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특고압시설과 전기설비가 운영되는 시설로, 본처리장과 펌프장에 각각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함.
 - 본처리장은 센터 내 다수의 지구변전실을 총괄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므로 6·7급 상당의 ‘나’ 군 전문경력관(2명)이 요구되고, 펌프장은 8·9급 상당의 ‘다’ 군 전문경력관(2명)이 필요함.

〈 물재생센터 변전·전기설비 현황 〉

구분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본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본처리장	유입펌프장
수전전압(kV)	154	22.9	22.9	22.9
계약전력(kW)	44,000	1,250	11,000	6,934
지구변전실	25개소	1개소	12개소	2개소
분전반	352면	22면	243면	138면
비고	본처리장과 펌프장이 독립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 필요			

- 도로사업소는 터널 내 제트팬, 배수펌프 등의 운영을 위해 7개소의 터널에서 특고압전력을 이용하나, 지구변전실 수량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운영 및 관리·감독의 범위가 협소하므로 ‘다’ 군 전문경력관(8명)이 요구됨.

〈 특고압전력을 사용하는 도로사업소 터널·지하차도 현황 〉

도로사업소	동부				서부			강서 서부트럭 터널지 (‘14년)
	위례 (‘14년)		위례 중앙(지) (‘17년)	신원(지) (‘13년)	남산 1호 (‘70년)	남산 2호 (‘70년)	남산 3호 (‘78년)	
터널·지하 차도명 (준공년도)	상행	하행						
터널연장	2.3km	2.3km	1.2km	0.7km	1.5km	1.6km	1.2km	1.0km
수전전압(kV)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계약전력(kW)	1,150	1,150	1,652	2,000	2,000	1,500	1,000	1,150
지구변전실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분전반	18면	21면	23면	18면	59면	49면	45면	24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례터널(L=2.3km)은 상·하행 분리터널로 변전시설을 각각 분리 운영 • 신원지하차도는 청계산지하차도(0.9km)의 빗물 배수를 통합 처리 							

-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변전시설 등에 대한 순찰·점검, 운전·조작에 대한 감독 및 안전관리,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전담하나, 높은 사고 위험과 사고 시 법적 책임 발생 등으로 기피되고 있는 업무임.

- 이에 따라 기존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하거나 전출한 후에 신규 담당자의 선임이 어렵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특고압시설 및 전기설비가 운영되는 시설물로 화재 예방 및 재난 시 방재성능 유지, 점검·검사 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함.
 -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는 고압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관리 책임 확보를 위해 전문경력관(‘다’ 군, 19명)을 지정한 바가 있음(2016년 7월).

바. 종합의견

- 개정안 중 재난대응 부서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증원과 전문경력관 확대를 위한 정원 조정은 행정수요를 반영한 적재적소의 인력 운영이라 판단됨.
- 또한, 중간관리 집단인 5·6급에 대한 정원채정 기준 확대는 향아리형 선순환 직급구조로의 개선을 통해 근속승진과 5급 승진 적체로 이미 현원이 과다한 6급 정원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함으로써 조직의 활력 제고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증원 없이 부서 간 기능조정과 재편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시장의 역점사업과 긴급한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인력 투입과 조직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5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직급체계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 (4급, 소방정)를 신설하여 소방 인력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소방령 이하 Δ 1 → (본청) 소방정+1

나. 신규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 시설추진반’(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4급)로 격상·확대

- (본청) 4·5급 Δ 1 → 4급 +1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물재생센터(4명) 및 도로사업소(8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

- (사업소) 5급 이하 Δ 12 → 전문경력관(고압전기안전관리) +12

라. 정책기획 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및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별표2, 3)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이내)	5급 (이내)	6급 (이내)	7급 (이내)	8·9급 (이상)	전문경력관 (이내)
현 행	3.5%	14.5%	34.5%	35.5%	10.5%	1.5%
개정(안)	3.5% (-)	16.5% (+2.0%p)	37.0% (+2.5%p)	34.5% (Δ1.0%p)	7.0% (Δ3.5%p)	1.5% (-)

[별표2]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이내)	연구사 (이상)	지도관 (이내)	지도사 (이상)
현 행	17%	83%	10%	90%
개정(안)	22% (+5.0%p)	78% (Δ5.0%p)	20% (+10.0%p)	80% (Δ10.0%p)

[별표2]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이내)	5급상당 (이내)	6급상당 (이내)	7급상당 (이내)	8급·9급상당 (이상)
비 율	34%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구 분	4급상당 이상 (이내)	5급상당 (이내)	6급상당 (이내)	7급상당 이하 (이상)	
비 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2.0%p)	4%이상 (Δ2.0%p)	

[별표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이내)	소방령 (이내)	소방경 (이내)	소방위 (이내)	소방장 (이내)	소방교 (이내)	소방사 (이상)
현 행	1%	2.2%	6.3%	7%	15%	33%	35.5%
개정(안)	1%	3% (+0.8%p)	7% (+0.7%p)	8% (+1.0%p)	15%	33%	33% (Δ2.5%p)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3. 3. 23. ~ 3. 27.) 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총 1건)
반영으로 별표 4의 표 중 4급란, 4·5급란의 개정사항 추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기획경제전문위원실-801(2023.3.27.)호)
기획조정실의 분장 규정 중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호)"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개발, 시유재산 총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획조정실에서 현재처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이 요구됨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2133-672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일반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비율란 및 별정직공무원의 구분란, 비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비율	22%이내	78%이상	20%이내	8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4%이상		

별표 3의 표 중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1%이내	3%이내	7%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33%이상
----	------	------	------	------	-------	-------	-------

별표 4의 표 중 4급란, 4·5급란, 5급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56	153	19	8	68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48	
----------	--------	--

전문경력관 소계	149	
----------	-----	--

별표 5의 표 중 소방공무원 소방정란 및 소방령 이하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정	32	3		29		
-----	----	---	--	----	--	--

소방령 이하 계	7,396	
----------	-------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4.5%이내</td> <td>34.5%이내</td> <td>35.5%이내</td> <td>10.5%이상</td> <td>1.5%이내</td> </tr> </table>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r> <td>비율</td> <td>17%이내</td> <td>83%이상</td> <td>10%이내</td> <td>90%이상</td> </tr> </table> <p>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상당 이상</th> <th>5급상당</th> <th>6급상당</th> <th>7급상당</th> <th>8급·9급상당</th> </tr> <tr> <td>비율</td> <td>34%이내</td> <td>50%이내</td> <td>10%이내</td> <td>5%이내</td> <td>1%이상</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0.5%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이내	83%이상	10%이내	9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p>[별표 2] ----- ----- -----</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6.5%이내</td> <td>37.0%이내</td> <td>34.5%이내</td> <td>7.0%이상</td> <td>1.5%이내</td> </tr> </table>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r> <td>비율</td> <td>22%이내</td> <td>78%이상</td> <td>20%이내</td> <td>80%이상</td> </tr> </table> <p>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상당 이상</th> <th>5급상당</th> <th>6급상당</th> <th>7급상당 이하</th> </tr> <tr> <td>비율</td> <td>34%이내</td> <td>50%이내</td> <td>12%이내</td> <td>4%이상</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2%이내	78%이상	20%이내	8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4%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0.5%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이내	83%이상	10%이내	9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2%이내	78%이상	20%이내	8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4%이상																																																																																																																																									
<p>[별표 3] 서울특별시에서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r> <td>비율</td> <td>1%이내</td> <td>2.2%이내</td> <td>6.3%이내</td> <td>7%이내</td> <td>15%이내</td> <td>33%이내</td> <td>35.5%이상</td> </tr> </table>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2.2%이내	6.3%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5.5%이상	<p>[별표 3]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r> <td>비율</td> <td>1%이내</td> <td>3.0%이내</td> <td>7.0%이내</td> <td>8%이내</td> <td>15%이내</td> <td>33%이내</td> <td>33%이상</td> </tr> </table>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0%이내	7.0%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33%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2.2%이내	6.3%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5.5%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0%이내	7.0%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33%이상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1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4급</td> <td>255</td> <td>152</td> <td>19</td> <td>8</td> <td>68</td> <td>8</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6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5	152	19	8	68	8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60						전문경력관 소계	137						(생략)							<p>[별표 4]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1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4급</td> <td>256</td> <td>153</td> <td>19</td> <td>8</td> <td>68</td> <td>8</td> </tr> <tr> <td>4·5급</td> <td>9</td> <td>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4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4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6	153	19	8	68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48						전문경력관 소계	149						(생략)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5	152	19	8	68	8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60																																																																																																																																												
전문경력관 소계	137																																																																																																																																												
(생략)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6	153	19	8	68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48																																																																																																																																												
전문경력관 소계	149																																																																																																																																												
(생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 ----- -----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소방공무원 계	7,434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31	2		29			소방정	32	3		29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397						소방령 이하 계	7,39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며

직급체계 개편은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